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호(2015.07.30.) 세운3-4구역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9호(2015.7.30.) 세운3-5구역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1호(2017.1.26.)로 구역통합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16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대/ 7,032.40㎡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더센터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선권수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7호 (역삼동, 한신인터밸리24빌딩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07월 30일
7. 주요 변경내용
 - 촉진계획 변경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분담계획 변경
 - 건축물 주용도 변경 (업무/숙박시설→공동주택)
 - 건축계획 변경
 - 당초 : 세운3-4구역 (지하7, 지상19층 연 51,557.99㎡,업무시설)
 - 세운3-5구역 (지하4, 지상20층 연 19,969.26㎡, 숙박시설)
 - 변경 : 지하8, 지상27층 연 76,433.09㎡, 공동주택
 -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차량 진출입구 위치변경 등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대지면적 (㎡)	층수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건축계획		비고
						전용면적	세대수	
5,500.42	지하8층 지상27층	76,433.0 9	61.09	901.48	89.9	전용 40㎡미만	216	
						전용 40㎡이상 ~ 60㎡미만	368	
						전용 60㎡이상	24	
						총 계	총 608세대	

9. 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정비기 반시설	용 도 폐 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	종 류	규 모 (㎡)	종 류	규 모 (㎡)	시 행 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	도로	769.9㎡	도 로	1,328.9㎡	더센타시티주식회사	시행사 설치 후 기부채납
			공 원	203.1㎡	더센타시티주식회사	시행사 설치 후 기부채납
	합 계	769.9㎡	합 계	1,532㎡	더센타시티주식회사	시행사 설치 후 기부채납

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